

환수금액 산정?

환수대상자에 대해 장학금 총 지급액 중 초기 2년의 지급액을 제외하고, 남은 의무종사 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합니다.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left(\begin{array}{c} \text{학사학위과정} \\ \text{수학 중에 지급한} \\ \text{연구장려금} \end{array} - \begin{array}{c} \text{지급한 연구장려금} \\ \text{중 초기 2년의} \\ \text{연구장려금}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남은} \\ \text{의무종사기간}}{\text{총 의무종사기간}}$$

환수 절차는?

1. 졸업보고

- 장학생은 졸업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소속대학에 신고하고, 소속대학은 장학재단에 졸업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의무종사 보고 및 유예 신청

- 장학생은 졸업 후 진학 또는 취업 등 의무종사 시작·변동·완료 시 장학재단에 의무종사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미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 유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 장학재단은 환수의무가 발생한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하고 통보합니다.

4. 이의신청 및 상환유예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원) 재학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상환유예 필요시 상환유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금액에 따라 일시 및 분할 상환 약정 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용어 정의

연구장려금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등의 금품

환수대상자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

의무종사기간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수혜 기간)

장학생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



환수? 이공계 종사의 의지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환수는 우수 장학생들의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며,

장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운영 할 것입니다.

이공계의 최우수 인재가 되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해주세요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사업 환수제도

환수 란?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 또는 진출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은?

환수제도는 이공계 우수 국가 장학금이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습니다.

환수제도 적용 대상은?

20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에 대상입니다.

환수 대상자의 기준은?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취업 등으로 인한 유예 및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공계 분야 종사 확인 시 환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공계 이외의 분야(전공)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의예과·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내용에 준하는 경우(산업분야분류표에 따른 업종에 따라 이공계 판단 등)

자주 묻는 질문



Q 환수를 왜 하는 건가요?

A 장학금 환수는 이공계 우수 국가 장학금이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계에 지속적으로 몸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환수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장학금 환수제도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 2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Q 어떠한 경우에 환수를 하는 건가요?

A 재학생의 경우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의무 종사하지 않을 경우 환수를 하게 됩니다.

Q 의무종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의무종사기간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일수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총 의무종사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단, 3학기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합니다.

Q 환수대상자일 경우 환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장학금 총 지급액에서 초기 2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의무 종사를 채우지 못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액이 4년간 1000만원, 초기 2년 지급금액이 500만원이고, 이공계 종사기간이 2년 일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1000만원 - 500만원) * (2년 / 4년) = 250만원이 환수금액으로 산정됩니다.

Q 장학금 환수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12년도 이후 신규 선발된 장학생의 소속대학은 의무적으로 졸업 보고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의무종사 시작, 변동, 종료 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 완료 여부에 따라 환수대상자가 결정됩니다.

Q 이공계·비 이공계 학과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A 이공계 학과는 대학(원)별 학과분류 체계에 따라 자연과학계열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합니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과의 이공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의를 통하여 이공계 학과 진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공계 종사여부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내/외 이공계 및 융·복합 분야 기관 또는 단체 근무, 기능대학 수학,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박사 후 연구원 등이 이공계 종사로 인정되며, 비 이공계 종사로 판정되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이공계 종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분류에 따른 기준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의 산업 분야분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졸업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졸업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학교에 통보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졸업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학·연 종사 발생 및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의무종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 및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Q 해외 진출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진출(진학, 취업 등) 시 국내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유학, 해외이주자 등은 출국 전까지 재단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 시 환수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Q 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이 4학기로 2년 이내인데 상환해야 하나요?

A 환수금액 산정의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하고 산정되기 때문에, 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졸업 후 미취업인 경우에도 상환해야 하나요?

A 졸업 후 미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종사 유예 신청(최대 2회)이 가능하며, 장학재단의 승인을 거쳐 유예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어 환수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Q 환수 대상자이지만, 약정 기간 내에 상환이 힘들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후 환수금액을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장학재단으로 상환 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최대 2년 또는 졸업시 까지)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Q 연구장려금을 재학중 우수자 유형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수대상 적용이 되나요?

A '12년 이후에 재학 중 우수자 유형(3학년으로 선발되어 2년간 지원받은 경우)은 초기 2년 지급금액을 제외하고 환수하기 때문에 환수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으로 선발되기 이전에 한 학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초기 2년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년 초과분에 대하여 환수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Q 현재 비이공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향후 이공계 종사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 의무 종사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무종사 유예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2년, 최대 2회) 동안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기간 내에 이공계 산·학·연에서 의무종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단,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에 편입·진학의 경우에는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능 합니다.

Q 산업분야분류표 기준으로 비 이공계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공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환수대상인가요?

A 비 이공계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하여 이공계 업무에 해당됨이 확인될 경우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Q 이공계 환수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2012년 이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선발자 대상이며,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한 이후 비이공계로 진출 시 발생됩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선
한국장학재단 환수관련 안내 콜센터
(1599-2000)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